

세무관세뉴스

Story title on two lines
Lorem ipsum

lorem ipsum

Story title on two lines
lorem ipsum

Story title on two lines
lorem ipsum

2023년 6월

Page XX

Page XX

Page XX

주목할 만한 사항:

법인소득세 ("CIT")

- 투자 프로젝트가 제1급 도시 지역에 위치한 경우 지역기반 CIT 인센티브의 적용대상이 아님
- 수입품에 대한 환급 수입관세는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기타 소득으로 인식됨
- 기업의 광고 및 축제활동 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산입 가능함

노동 및 사회 보험

- 호치민에서 노동허가서 발급 시간 단축

외국인계약사제 ("FCWT")

- 외국기업 간에 거래되지만 베트남에서 배송되는 물품은 FCWT 과세대상임

간접세 ("VAT")

- 정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VAT율을 10%에서 8%로 감면에 대한 제44/2023/ND-CP호 시행령을 공포함
- 사무실 임대 서비스에 대한 VAT 인보이스

개인소득세 ("PIT")

- 게임쇼 플레이어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0만동를 초과하는 상금부분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함
- 비거주자 개인의 소득은 베트남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세금이 면제됨

무역 및 관세

- 최혜국 ("MFN") 수입관세, 수출관세, 절대관세, 혼합관세, 쿼터외물량 관세 및 일반 수입 관세 발행
- 수출입물품 원산지 결정에 대한 규정
- 내국 수출입활동에 대한 정책, 관세절차 개정-보완 제안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투자 프로젝트가 제1급 도시 지역에 위치한 경우 지역기반 CIT 인센티브의 적용대상이 아님

도시가 제1급 도시 지역으로 인정된 일자 이후에 회사가 투자허가서를 받으면 지역기반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3년 5월 31일 제9516/CTBDU-TTHT호 OL)

수입품에 대한 환급 수입관세는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기타 소득으로 인식됨

회사가 2021년에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2022년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환급 받은 경우 2022년의 기타소득에 포함해서 인식한다.

(Nghe An 세무국의 2023년 4월 28일 제2299/CT-TTHT호 OL)

기업의 광고 및 축제활동 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산입 가능함

기업이 축제에서 광고 및 브랜드 홍보 서비스를 사용하고 축제 개최위원회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VAT인보이스를 발행하도록 예술 공연 센터에게 위임하는 경우:

- 기업의 생산 및 영업을 위해 구입한 VAT 과세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보이스는 규정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매입 VAT가 공제 가능하다.
- 기업의 광고 및 축제 활동 지원과 관련 비용은 규정조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 가능하다.

(하이퐁 세무국의 2023년 5월 22일 제2520/CTHPH-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신규 규정

지침 문서

정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VAT율을 10%에서 8%로 감면에 대한 제44/2023/ND-CP호 시행령을 공표함

2023년 6월 30일에 정부는 2023년 부가가치세 (“VAT”) 감면에 관한 제44/2023/ND-CP호 시행령을 공표했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되며 VAT 10% 대상인 물품 및 서비스에 적용한

본 시행령에 따른 VAT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가 아래와 같다:

- a) 통신, 금융 활동,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및 조립식 금속 제품, 광산 제품 (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 석유, 화학 제품. 세부 내용은 이 시행령의 부록 I을 참조
- b)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 세부 내용은 이 시행령의 부록 II을 참조
- c) 정보 기술에 관한 법규정에 따른 정보 기술. 세부 내용은 이 시행령의 부록 III을 참조

적용 대상인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VAT 감면은 수입, 생산, 가공 및 거래과정에서 일관적으로 적용된다.

기업은 VAT 신고서 및 이 시행령의 부록 IV의 Form 01로 VAT 감면 대상인 물품 및 서비스를 신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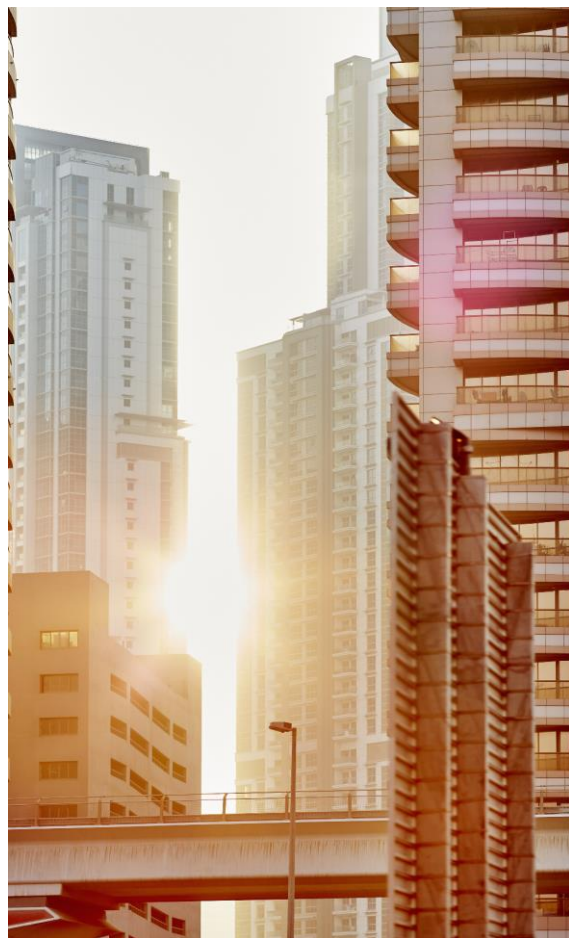
(정부의 2023년 6월 30일 제44/2023/ND-CP호 시행령)

사무실 임대 서비스에 대한 VAT 인보이스

사무실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때 VAT 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회사는 제123/2020/ND-CP호 제4조 1항에 따라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사무실 임대 서비스에 대한 VAT 과세가격은 제219/2013/TT-BTC호 시행규칙 제 7조 22항에 따라 회사가 받은 서비스 보수 외에 추가 요금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

(2023년 5월 23일자 하노이 국세청 발행 공문 번호 35355/CTHN-TTHT)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노동 & 사회 보험

신규 결정

호치민에서 노동허가서 발급 시간 단축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에 노동허가서와 관련 3가지의 수정절차에 대한 결정서 및 지침을 공표하였다. 구체적으로:

1. 직접 근로계약서 등록 (해외 출근자)
2.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확인
3.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연장.

그중에:

-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확인절차는 근무일 5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서 연장 절차는 신청서 양식, 신고서등 조정하고 처리기간을 근무일 기준으로 5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본 결정은 서명일로부터 유효된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2023년 6월 2일 제2273/QD-UBND호 결정)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게임쇼 플레이어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0만동를 초과하는 상금부분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함

하노이 세무국에 따라 부동산 회사가 “Hunting the million-dollar house” 게임쇼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회사 직원이 아닌 당첨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때 PIT를 원천징수하고 당첨자를 대신하여 PIT 신고할 책임이 있다. 세금 신고서는 제92/2015/TT-BTC호 시행규칙에 첨부된 Form 06/TNCN를 적용한다.

당첨상금 소득에 대한 PIT 계산은 제111/2013/TT-BTC호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당첨상금의 과세 소득은 상금을 받은 횟수에 관계없이 개인이 당첨할 때마다 1,000만동를 초과하는 상금부분이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5월 24일 제35708/CTHN-TTHT호 OL)

비거주자 개인의 소득은 베트남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세금이 면제됨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의 PIT 계산은 거주 상태에 따라 한다.

외국인 전문가가 베트남 거주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소득은 소득지급 장소와 상관없이 전세계소득 (베트남 및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이다. 개인은 해외에서 지급받 소득을 베트남 세무당국에 직접 PI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전문가가 베트남 거주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베트남의 비거주자로 결정되며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만 PIT 과세된다. 지급 받은 소득이 베트남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베트남 PIT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6월 12일 제40818/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외국기업 간에 거래되지만 베트남에서 배송되는 물품은 FCWT 과세대상임

세무총국의 지침에 따르면, 외국기업 간에 거래된 물품은 베트남 기업을 통해 베트남 영토내에서 배송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은 FCWT 과세 대상이다.

베트남 당사자는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FCWT를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세무총국의 2023년 5월 17일 제1861/TCT-CS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최혜국 ("MFN") 수입관세, 수출관세, 절대관세, 혼합관세, 쿼터외물량 관세 및 일반 수입 관세 발행

2023년 5월 31일에 정부는 최혜국 ("MFN") 수입관세, 수출관세, 절대관세, 혼합관세, 쿼터외물량 관세를 규정하는 제 26/2023/ND-CP 호 시행령 ("제 26 호 시행령") 을 공표하였다. 제 26 호 시행령은 2023년 7월 15일부터 유효되며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 시행령의 부록 1의 그룹 #211 상품에 적용되는 수출관세율
- MFN 수입 관세
- 가공 기계, 중고차 등 일부 특정한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 자동차 부품에 대한 특별우대수입관세 프로그램 적용기간 연장 및 신청절차
- 물품 목록 및 할당량 외 관세율표

제 26 호 시행령의 같은 발행일인 2023년 5월 31일에 국무총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일반 수입 관세율을 규정하는 제 15/2023/QD-TTg 호 결정 ("제 15 호 결정")을 발표하였다.

수출입 관세를 규정하는 제 26/2023/ND-CP 호 시행령 및 제 15/2023/ND-CP 호 결정서에 대한 딜로이트의 뉴스를 [여기](#) 참조하십시오.

(2023년 5월 31일 정부의 제 26/2023/ND-CP 호 시행령 및 2023년 5월 31일 제 15/QD-TTg 호 결정서)

수출입물품 원산지 결정에 대한 규정

2023년 5월 31일에 재무부 ("MOF")는 수출입물품 원산지 결정에 관한 제 33/2023/TT-BTC 호 시행규칙 ("제 33 호 시행규칙") 을 공표하였다. 제 33 호 시행규칙은 2023년 7월 15일부터 유효되며 제 38/2018/TT-BTC 호 시행규칙 및 관련 수정 보완 시행규칙을 대체한다.

본 시행규칙의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물품 원산지 사전 심사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 수입 단계에서 관세신고 시 원본 대신에 원산지증명서 ("P/O")의 스캔/복사본 제출 수락
- P/O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차이 및 HS 코드 차이의 경우

수출입 물품 원산지 결정에 대한 제 33/2023/TT-BTC 호 시행규칙과 관련 딜로이트의 뉴스를 [여기](#) 참조하십시오.

(2023년 5월 31일 재무부의 제 33/2023/TT-BTC 호 시행규칙)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주목할 만한 뉴스

내국 수출입활동에 대한 정책, 관세절차 개정-보완 제안

관세총국 ("GDC")은 제08/2015/ND-CP호 시행령 ("제8호 시행령") 제35조에 대한 개정-보완을 제안한다.

1. 시행령 제35조에 내국 수출입 거래에 대한 현행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한다.
2. GDT와 지역 세무국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내국 수출입의 경우에 세금을 관리하고 징수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베트남에서 가공 의뢰된 물품으로 가공을 의뢰한 외국 단체나 개인이 베트남에서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판매되는 물품
 - 외국 단체나 개인에게 수출하기 위해 수입 원자재로 베트남에서 생산된 물품을 베트남 내 다른 기업에 배송 및 수령하도록 지정한 경우
 -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상업적 존재가 없는 외국 상인이나 개인 간에 거래 되는 물품으로 외국 상인이 해당 물품을 베트남 내 다른 기업에 배송 및 수령하도록 지정한 경우

제08/2015/ND-CP호 시행령 제35조 개정-보완 초안에 대한 관세총국의 제안과 관련 딜로이트의 뉴스를 [여기](#) 참조하십시오.

(2023년 5월 29일에 관세총국 ("GDC")은 제/2587/TCHQ-GSQL호 OL 및 제/2588/TCHQ-GSQL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